

완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「완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
조례안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
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
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.

2026년 7월 9일

완 도 군 의 회 의



1. 조 례 명 : 완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2. 발 의 자 : 김세윤 의원 외 8명
3. 개정이유

「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」(법률 제21446호,
2026.3.5., 제정)에 근거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(2026.7.1.)
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가. (기존)전라남도, 전라남도의회 →

(수정)전남광주통합특별시,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(안 제6조제1항)

5. 관련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49조

6. 예고기간 : 2026. 7. 9. ~ 2026. 7. 13.(5일간)

7. 의견제출

-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26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완도군의회 의장(참조 : 의회사무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제출 사항

- 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 이견과 그 이유)
- (2)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·주소·전화번호

나. 의견 제출할 곳 : 완도군의회 의회사무과(의사운영팀)

-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48 / (우) 59121

(전화: 061-550-5913, FAX: 061-550-5907)

다. 의견제출 방법

- 서면·전화·팩스·직접방문 등

8. 기타

- 자세한 사항은 의회사무과 의사운영팀(전화: 061-550-5913)으로

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붙임 1.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(서식) 1부.
2. 완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
조례안 1부. 끝.

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

조례안 예고명	완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		
의견 제출자	성명 (개인/단체)		전화번호	
	주소			

검토의견 (의견제출 내용)

--

「완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의
조례안 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.

년 월 일

제 출 자 (서명 또는 인)

완도군의회 의장 귀하

완도군의회 조례 제 호

완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완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**전라남도 위임사무**”를 “**전남광주통합특별시 위임사무**”로, “**전라남도의회**”를 “**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**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